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광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15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20.

발 의 자 : 임광현 · 정일영 · 오기형
김태년 · 윤호중 · 이연희
정성호 · 정태호 · 강준현
김영환 · 박홍배 · 이기현
강유정 · 황정아 · 김기표
문금주 · 윤종균 · 이재관
민홍철 · 송재봉 · 박민규
안규백 · 차지호 · 정진욱
박희승 · 최기상 · 임미애
조계원 의원(28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여 2단계의 누진세율로 분류과세하도록 하면서,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.

그런데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두었으나,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의 우려되고 있음.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

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102조의6 삭제 등).
- 나.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삭제에 따른 특별징수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89조제3항 및 제103조제13제2항 등).
- 다. 「지방세기본법」 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부칙 제3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15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제3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.

제102조의6을 삭제한다.

제102조의7제3항제2호 중 “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제97조”를 “제97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03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.

제103조의59제1항제1호나목 중 “매매차익예정신고, 같은 법 제87조의 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”를 “매매차익예정신고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	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
제89조(납세지 등) ① · ② (생략)	제89조(납세지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, 제103조의29,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: 그 소득의 지급지. 다만, 다음 각 목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납세지로 한다.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가.·나. (생략)

다.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

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
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좌
보유자의 인출을 제한한
경우 그 금융투자소득에
대한 지방소득세: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해당 계좌
의 개설지

제102조의6(예정신고와 납부) ①

거주자가 「소득세법」 제87조
의21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
정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조
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2개
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
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과
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
소득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
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
야 한다. 이 경우 거주자가 납
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
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
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
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
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없다.

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1.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
및 감면세액

2.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
수시부과세액

제102조의7(과세표준 확정신고와
납부) ① . ② (생략)

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

제102조의7(과세표준 확정신고와
납부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부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
산출세액 또는 제97조 및 제1
02조의8에 따라 결정·경정한
세액

3. (생략)

4.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
수세액

제103조의13(특별징수의무) ①
(생략)

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
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
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
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
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
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
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
한다.

1. 「소득세법」 제128조제2항
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97조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103조의13(특별징수의무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128조제2
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
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
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
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
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
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.

<삭 제>

반기(半期)별로 납부하는 경
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
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
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
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
납부한다.

2.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
방소득세의 경우 해당 과세기
간의 반기 중에 계좌가 해지
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
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
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
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
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.

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
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
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
경우에는 각 계좌보유자별 특
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
「소득세법」 제148조의2제1항
각 호의 기간 중 그 인출을 제
한할 수 있다.

④ 「소득세법」 또는 다른 법
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
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「소득
세법」 제148조의2제5항에 따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⑤ · ⑥ (생략)

제103조의59(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)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(이하 이 조에서 “세무서장등”이라 한다)은 소득세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「국세기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(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) 받은 경우: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.
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
제103조의59(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) ①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.
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「소득세법」 제70조, 제71조, 제74조, 제87조의23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<u>매매차익예정신고</u> ,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 <u>소득 예정신고</u>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: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	나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매매</u> <u>차익예정신고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다. (생 략)	다. (현행과 같음)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